

# 일본 법정 규약 출처 ICTI 번역문

## 이라크국제범죄민중법정규정(일본 ICTI)

2003년7월3일 기초  
2003년12월23일 결정

### 제1조 국제법정의 권한

국제법정은, 본규정의 정한바에 따라, 1992년 2월 29일 이후에 이라크 영역내에서 국제인도법의 중대한 위반을 범한 개인을 소추할 권한을 가진다.

\*1992년 2월 29일은 「만안전쟁(걸프전쟁)」에 즈음하여 램지클락씨의 요청으로 개최된 전쟁법정의 판결기일.

### 제2조 침략의 죄

1. 침략의 죄라함은, 타국에 대해서 자국의 정치적, 군사적행동을 지시할 권한있는 자 또는 지휘를 실행할 입장에 있는 자에 의해, 국가주권, 영토권, 국가의 정치적 독립내지 타국인민의 불가침원 인권에 대한 위협 또는 침범을 목적으로 하고, UN헌장에 위반하는 무력행사에 의해, 타국인민으로부터 인민자결, 자유 및 독립의 권리를 탈취하는 것이다.

2. 침략을 구성하는 무력행사라함은,

(a)타국의 영토에 대한 무력에 의한 침공또는 공격, 설령 일시적인 것일지라도, 당해침공의 결과로 발생한 군사적 점령, 타국 또는 그 일부의 영역의 무력행사에 의한 병합.

(b)타국의 영토에 대한 무력에 의한 공중폭격

(c)무력행사에 의해 타국의 항구 또는 연안을 봉쇄하는 것

(d)무력행사에 의해 타국의 영해 또는 육군, 공군, 해군을 공격하는 것

(e)받아들인 나라의 협정에 의해 주어진 조건에 반해서 타국의 영역내에서 무력을 행사하는 것, 또는 당해협정의 만료기한을 지나서, 당해영역내에 계속 주둔하는 것.

(f)타국이 자유롭게 사용하는 자국의 영역내에서, 당해타국이 제3국에 대한 침략행위를 범하기 위해 사용할 것을 허가하는 행위.

(g)한 나라에 의해 또는 한 나라를 대신해, 위의 모든 행위에 해당하는, 또는 사실상의 개입에 해당하는 것과 같은 중대성을 가지고 타국에 대해 무력행위를 실행하는 군단, 조직, 부정규군 또는 용병을 파견하는 것이다.

### 제3조 제노사이드

본규정의 목적에 관하여 「제노사이드」라 함은, 국민, 민족, 종족 또는 종교집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파괴할 의도를 가지고 다음에 열거한 행위를 하는 것을 의미한다.

(a)집단의 구성원을 살해하는 것.

(b)집단의 구성원에 대해서 중대한 심신의 해악을 가하는 것.

(c)집단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서 그 신체의 파괴를 초래할 것을 의도한 집단생활의 조건을 고의로 강요하는 것.

(d)집단내의 출생을 방해하는 것을 의도한 조치를 부과하는 것.

(e)집단의 아이들을 다른 집단에 강제적으로 이전하는 것.

### 제4조 인도에 대한 죄

국제법정은, 분쟁의 성질이 국제적인가 국내적인가에 관계없이, 무력분쟁에 있어 민간인에 대해 광범위한 공격 또는 계통적인 공격의 일환으로서 행해진 아래와 같은 범죄에 관해 책임을 지는 개인을 소추할 권한을 가진다.

- (a)살인
- (b)섬멸
- (c)노예화
- (d)강제이송
- (e)구금
- (f)고문
- (g)강간
- (h)정치적, 민족적, 종교적 이유에 기초한 박해
- (i)그 외의 비인도적인 행위

### 제5조 전쟁범죄

1. 국제법정은, 1949년 8월 12일의 제네바 모든조약의 중대한 위반을 범한, 또는 사람에게 명하여 행하게한 개인을 소추할 권한을 가진다. 즉, 제네바조약의 조항이 보호하고 있는 사람 또는 재산에 대한 이하의 행위이다.

- (a)고의에 의한 살인
- (b)생물학적 실험을 포함하는 고문 또는 비인도적인 취급
- (c)신체 또는 건강에 고의로 심각한 고통을 야기하거나 중대한 상해를 주는 것
- (d)군사적필요성에 의해서는 정당화되지 않고, 불법에 자의적으로 실행된 재산의 대규모 파괴 및 징발
- (e)전쟁포로 또는 민간인을 적대국의 군대에 사역하는 것.
- (f)전쟁포로 또는 민간인이 공정하고 정규의 재판을 받을 권리의 자의적인 침탈
- (g)불법한 강제이주 또는 이송 및 민간인의 불법한 감금
- (h)민간인을 인질로 삼는 것

2. 국제법정은, 국제법이 확립한 틀안에서, 국제무력분쟁에 적용되는 법규 및 관례, 기타 중대한 위반을 범한, 또는 사람에게 명하여 행하게 한 개인을 소추할 권한을 가진다. 즉, 이하의 행위이다.

- (a)일반주민 또는 적대행위에 직접참가 하고 있지 않은 민간인 개인에 대해서 의도하고 공격을 가하는 것.
- (b)민용물, 즉 군사목표는 아닌 목적물에 대해서 의도하고 공격을 가하는 것
- (c)국제연합헌장에 따라 인도적 원조 또는 평화유지활동에 관여하는 인원, 시설, 물자, 부대 또는 차량이고, 무력분쟁에 관한 국제법에서 민간인 또는 민용물에 대해서 부여된 보호가치가 있는 것에 대해 의도하고 공격을 가하는 것
- (d)공격이, 예기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군사적 이점에 비추어 명백하게 과잉이 되고, 민간인의 생명의 손실 혹은 부상, 또는 민용물에의 손해 혹은 자연환경에 대한 장기적 중대한 손해를 부수적으로 포함하는 것을 알면서, 의도하고 공격을 가하는 것
- (e)수단여하를 불문하고, 무방비이고 군사목표로 되어있지 않은 도시, 촌락, 주거지 또는 건물에 대한 공격 또는 폭격
- (f)무기를 내려놓았거나 더 이상 방어수단이 없이 항복한 전투원의 살해 또는 상해
- (g)휴전기, 적국 또는 국제연합기 또는 군장 혹은 제복 또는 제네바협약에서 특별히 정한 식별표

장을 부정하게 사용하는것에 의해서, 사람의 죽음 또는 중대한 신체상해를 발생하게 하는 것.

(h)정령군에 의해 그 점령하는 지역에 자국의 민간인의 일부를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이전시키거나 피점령지역의 주민의 전부 혹은 일부를 그 피점령지역내 혹은 밖으로 강제이송 혹은 이전 시키는 것

(i)종교, 교육, 예술, 과학 혹은 자선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건물, 역사적 유적, 병원 또는 병자 및 부상자를 집합시키고 있는 장소가 군사목표가 아닌데도 이것에 대해 의도하고 공격을 가하는 것.

(j)관계인의 의료, 치과치료 혹은 요양으로서 정당화되지 않고, 또, 그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 행해지는 것이 아니고, 또, 그들의 죽음 혹은 중대한 건강에의 위험을 발생시키는, 신체의 절단 또는 의학적 혹은 과학적인 실험에, 적측의 권력의 손안에 있는 사람을 따르게 하는 것

(k)적국 또는 적군에 속한 사람을 위계를 사용하여 살해하거나 상해하는 것

(l)전쟁의 필요 때문에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적측의 재산을 파괴 또는 접수 하는 것

(m)급습한 경우이더라도, 도시 또는 장소를 약취하는 것

(n)독 또는 독성이 있는 병기를 사용하는 것

(o)질직성가스, 독가스 또는 그 외의 가스 및 유사한 액체, 물자 또는 장치를 사용하는 것

(q)과도한 상해 또는 불필요한 고통을 생기게 할 성질을 가지거나, 또는 무력분쟁에 관한 국제법에 위반되는 무차별적인 성질을 가진 병기, 발사체 및 물질등에 전투수단을 사용하는 것. 단, 그러한 병기, 발사체 및 물자, 전투수단이 포괄적인 금지의 대상이 될 것을 요한다.

(r)강간, 성노예화, 강제매춘, 강제 임신, 강제불임수술 또는 그 외 제네바 협약에 중대한 위반이 되는 성폭력을 하는 것

3. 국제법정은, 전쟁범죄의 정의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1977년 6월 8일의 제네바 협약 제1추가적 성서를 참조할 수 있다.

## 제6조 개인에 대한 재판권

국제법정은, 본규정의 규정에 따라서, 자연인에 대해서 재판권을 가진다.

## 제7조 개인의 형사책임

1. 누구라도 본재판소의 관할에 속하는 범죄를 행한 경우는, 본규정에 따라 개인자격으로 문책당한다.

2. 본규정에 따라, 누구라도 다음에 열거한 경우에, 본재판소의 관할에 속하는 범죄에 관해서 형사상 문책을 당하는 동시에 처벌될 책임을 진다.

(a)단독으로, 또는 타인과 함께, 혹은 타인을 개입시켜 범죄를 행하는 경우. 단, 그 타인이 형사책임을 지는지 아닌지를 불문한다.

(b)실제로 행하거나 착수된 범죄의 실행을 명하고, 부추기고, 유도하는 경우.

(c)이러한 범죄의 실행을 용이하게 할 목적을 가지고, 범죄의 실행을 위하여 수단을 제공하는 것을 포함하는, 범죄의 실행 또는 실행의 작수를 원조, 지원 또는 기타 방조하는 경우.

3. 피고인의 공적입장을 불문하고 --설령 국가나 정부의 원수나 정부고관일지라도--그 피고인의 범죄책임은 경감되지 아니한다.

4. 본규정 제2조내지 제5조에 기재된 범죄행위하 피고인의 부하에 의해 범해졌다 할지라도, 피고인이 자신의 부하가 그러한 행위를 범하는 것, 또는 범한 것을 알고있거나 알수 있었을 경우, 또는 피고인이 그러한 행위를 피하기위해 필요충분한 조치를 취한 것 내지는 그 행위를 범한 개인을 별하는 것을 해태한 경우는 피고인의 형사책임은 경감되지 아니한다.

5. 피고인이 정부 또는 상관의 명령에 따라 죄를 범한 경우는, 피고인의 형사책임은 경감되지 아

니한다.

#### 제8조 국가의 책임

개인의 형사책임에 관한 본규정의 어떠한 조항도, 국제법에 따라서 국가의 책임을 추궁할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 제9조 영역적 재판권 및 시간적 재판권

국제법정의 영역적 재판권은, 지상영역, 항공영역 및 수역을 포함하는 이라크 영토에 미친다. 당국 제법정의 시간적 재판권은 1992년 2월 29일 이래의 시간에 미친다.

#### 제10조 국제법정의 구성

국제법정은, 이하의 조직에 의해 구성된다.

(a)판사

(b)검사

(c)사무국---재판부와 검사의 사무를 관장한다.

#### 제11조 재판부의 구성

재판부는, 7명의 독립한 판사로 구성된다.

#### 제12조 판사의 적성

판사는, 높은 윤리관, 공정함과 성실함을 가진, 각자의 나라에서 최고의 법적직무에 취임할 만큼의 적성을 가지고 있는 자로 한다. 재판부는 형법과 국제인도법이나 인권법을 포함한 국제법의 분야에서 경험을 가진 판사로 구성된다.

#### 제13조 절차증거규칙

국제법정의 판사는 예심절차, 공판, 증거의 허용성, 피해자 및 증인의 보호 기타 그에 적합한 사항에 관해서 절차증거규칙을 채택한다

#### 제14조 검사

1. 검사는, 1992년 2월 29일 이래로 이라크 영역내에서 발생된 국제인도법의 중대한 위반에 관해 책임을 가진 개인을 수사하고 소추할 책임을 가진다
2. 검사는 높은 윤리관을 가지고, 형사사건의 수사와 소추의 처리에 뛰어난 능력과 경험을 가져야만 한다.
3. 검사는, 국제법정에서 독립한 기관으로서 직무를 다한다. 검사는 어떠한 정부나 기타 관계자의 지시를 바라거나, 또는 그들로부터 지시를 받아서는 아니된다.

4. 검사부는, 검사 및 필요한 적성을 가진 기타의 직원에 의해 구성된다.

#### 제15조 사무국

1. 사무국은, 국제법정의 운영 및 사무처리에 관한 책임을 가진다.
2. 사무국은, 사무국장 및 필요한 적성을 가진 기타 직원에 의해 구성된다.

## 제16조 수사 및 기소준비

1. 검사는, 직권상의 수사 또는 일체의 정보원 --특히 정부, UN 모든 기관, 국제기광 및 비정부조직(NGO) -- 으로부터 얻어진 정보에 기초한 수사를 진행할 수 있다. 검사는 수취한 정보, 혹은 입수한 정보를 음미하고 소송을 제기하기 위한 충분한 증거가 되는가를 결정한다.
2. 검사는, 증거를 수집하고 현장검증을 행하기 위해, 피의자, 피해자 및 증인을 추문할 권한을 가지는 것으로 한다.
3. 일단 충분한 증거라고 판단한 경우, 본규정에 기초하여 검사는, 피고인을 소추할 사실관계 및 범죄에 관한 간단한 진술을 포함한 기소장을 작성한다.

## 제17조 피해자 및 증인의 보호

국제법정은, 절차증거규칙의 안에서 피해자와 증인의 보호를 제공한다. 보호조치는 비공개심리나 피해자의 신원에 관한 보호를 포함하지만 그것들에 한정되지 아니한다.

## 제18조 법정의 자문 (amicus curiae)

재판부는, 사건의 적절한 결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 조직 또는 개인을 법정에 소환해, 재판부에 의해 지정된 논점에 관해 진술하게 할 수 있다.

## 제19조 판결

1. 재판부는, 국제인도법의 중대한 위반을 범한 개인에 관한 판결을 선고하는 것으로 한다.
2. 판결은 재판부의 합의에 의해서 결정된 것이고, 공개정에서 재판장에 의해 선고된다.

## 제20조 권고

재판부는 국제인도법의 중대한 위반을 범한 자, 관련한 정부 및 국제사회에 권고를 행하는 것으로 한다.

## 제21조 협력 및 사법협력

1. 비정부조직은, 국제인도법의 중대한 위반을 문책받고있는 개인의 수사와 소추에 관해 당국제법정에 협력한다.
2. 이하의 사항을 포함하지만 그것에 한정되지 않는 사항에 관해, 비정부조직은 재판부에 의한 협력요청 또는 명령에 대해 지체 없이 따른다.
  - (a)관계자의 신원과 거주지
  - (b)증언을 하고 증거를 제공하는 것
  - (c)문서의 제공

## 제22조 국제법정의 소재지

국제법정의 소재지는 일본으로 한다.

## 제23조 국제법정의 경비

국제법정의 경비는 비정부조직이 부담하는 것으로 한다.

## 제24조 사용언어

국제법정에서 사용언어는 일본어 및 영어로 한다. (연호는 서양력을 채용)